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파생상품 회계처리 평가 방법을 개선

- 금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함.
 - 현재 대다수 조선업체는 선박도급계약의 환율변동 위험 헤지를 위해 통화선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미실현평가손실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처리함.
 - 최근 장외파생상품(KIKO)을 거래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상태가 악화되고, 자본 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 등의 우려가 발생함.
- 현행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, 결산일 시점의 파생계약 평가손익(미실현손익 포함)을 당기손익으로 처리
- 단, 파생계약이 헤지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방식(‘예상거래’에 대해 헤지한 경우)과 공정가액위험회피 회계방식(‘확정계약’에 대해 헤지한 경우)을 인정
 -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방식은 미실현 파생계약 평가소실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만 반영되며, 공정가액위험회피 회계방식은 현물계약과 선물계약의 환율효과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임.
- 조선업 등 해외수주산업과 관련해서는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 적용을 허용
 - 동 방안은 10월 중 확정하여 확정일 이후 공시하는 정기보고서(분·반기 포함)부터 적용 가능하며, 현행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기준개정 없이 해석으로 시행
 - 조선업체 등의 경영상태를 보다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

재무 지표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일부 조선업체의 부채비율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

- 또한,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기업에도 본 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·외 투자자의 투자유인 증가, 대외 신용도 상승에 따른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
□ 반면, 장외파생상품(KIKO) 등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비상장 중소기업 중 현재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던 기업에 대해 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

- 본 개선안은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‘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’를 개정 추진할 예정임.
- 따라서,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재무적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

(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,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회계제도실-한국회계기준원, 10/21)